##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506

발의연월일: 2021. 4. 15.

발 의 자:소병훈·서영석·송재호

인재근 • 김남국 • 임종성

김영진 • 이성만 • 문정복

오영환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예산을 기반시설의 설치, 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, 재건축부담금의 부과· 징수, 임대주택의 매입·관리 등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규모에 비하여 세출사업에 집행된 예산이 적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동 특 별회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므로, 이를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여 지역역량을 강화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에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재정 집행의 탄력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제3항제1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특별회계의 설치 등) ①・	제24조(특별회계의 설치 등) ①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	③
용도로 사용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1의2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
	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
	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
	에 필요한 비용
2. ~ 6. (생 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
④・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